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2024년 여수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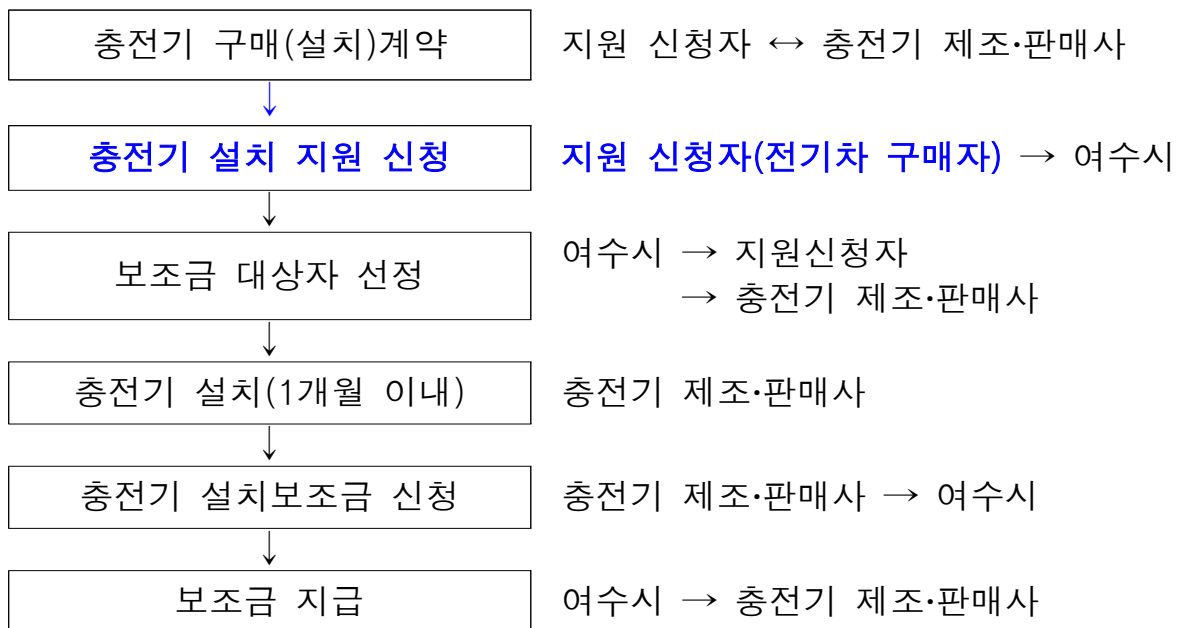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4. 1. ~ 4. 12.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인 경우 412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보급물량 : 45대(신청인당 1대 지원)
 - 총사업비 : 45,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대(충전기 종류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지원) 대상
 - (개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에 거주한 자
 - (법인, 단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여수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지 및 전기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여수시 소재 본인 소유지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함)
- ※ 무허가 건물 또는 신청자(본인) 거주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정부 및 여수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설치예정 장소에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OCPP1.6 인증을 거친 제품 또는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에 한함
- ※ OCPP1.6 인증을 받은 동종의 충전기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차후 추가로 등록된 도내기업은 별도공지가 없더라도 선정 가능함.

2 보조사업 추진 절차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지원기준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지원단가 : 최대 100만원/대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지원신청자가 부담

<명칭 정의>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완속충전기”는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를 말한다.
- “비공용 충전기”란 주로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 ~ 4. 12.

○ 신청서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구분	개인	법인 등
해당	①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공통	①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사업 안내 확인서 1부. (서식2) ③ 충전기 설치계약서(제품가격, 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1부. ④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 대장 1부. ⑤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확정 증빙서류 1부. ⑥ 현장점검 확인서(서식4) 1부. - 설치업체 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충전기 설치 요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충전기 설치 사용 승낙서(서식3) 1부. - 토지소유자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9689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2층 기후대기관리팀

- 접수시간 : 14:00 ~ 17:00

- 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기간 내 서류 보완 완료해야 함.

나. 접수자 : 지원 신청자 ※ 제조·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

다.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 검토 후 대상자 선정

1)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2) 2순위 : 전기자동차가 여수시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된 자

3) 3순위 : 여수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라. 결과통보 : 설치업체 및 개인별 문자 통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통보

※ 선정 대상자는 희망 제조사(사업수행기관)와 충전기 설치 운영 유지 관리계약(협정)을 체결

5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내역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서식 5)	⑦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제조·판매사)
② 현장설치확인서 1부.(서식 6)	⑧ 사업자등록증 1부. (제조·판매사)
③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한전) 1부.	⑨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 7)
④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1부.	⑩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1부.
⑤ 하자보증증권 1부.	⑪ 한전 불입금 영수증
⑥ 세금계산서 1부.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업체 (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0. 1. 1.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6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가. 사후관리 및 의무 사항

-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시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나.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 충전기 설치 장소는 여수시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주차공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소유 부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 참여기업은 「2024년 전기충전기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024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전 완속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가 이미 설치된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충전기 설치장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여수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여수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2024년 전기 충전기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에 따릅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여수시 기후생태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7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락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통합콜센터) 1661-097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통합콜센터) 1661-9408
한국전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통합콜센터) 1899-2100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tc.kepco.co.kr)	
여수시 (기후생태과)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061)659-3810

- 붙임 1. [붙임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2. [서식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신청서
3. [서식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4. [서식3] 현장 점검 확인서
5. [서식4]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6. [서식5] 현장 설치 확인서
7. [서식6] 보조금 정산서
8. [서식7]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9. [서식8] 청렴이행서약서
10. [참고1]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 완속충전기 제조 · 판매사 연락처 〉

업 체 명	콜 센 터	업 체 명	콜 센 터
(주)이카플러그	031-778-6181	이브이시스(주)	02-2139-3000
소프트베리	02-6925-4257	딜라이브	1644-3100
SK일렉링크	1566-1704	LG유플러스	1660-0365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	1877-6546	채비(주)	1522-2573
(유)성민기업	1800-8468	태성콘텍	053-856-5188
(주)타디스테크놀로지	02-6941-0609	현대엔지니어링	1833-8777
GS차지비	1544-4279	신세계아이앤씨	02-3397-1234
이엘일렉트릭	1600-0274	크로커스	1600-2693
(주)클린일렉스	02-1811-1350	(주)에버온	1661-7766
(주)차지비	1600-4047	(주)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주)휴맥스이브이	1800-3188	E1	02-3441-4114
(주)펄프킨	031-591-6633	엘에스이링크	1660-3175
클사인	02-6295-8055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02-3430-1279
아이마켓코리아	02-3708-5678	한화솔루션	1533-3464
(주)이지차저	1544-3332	한국전자금융	1533-5522
캐스트프로	070-4855-2090	브라이트에너지 파트너스	1600-8025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1522-1782	파킹클라우드	1588-5783

※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ev.or.kr) 에서 열람가능하며, 추가 등 변동될 수 있음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글씨 기재)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여수시가 충전시설(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으로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	(확인)
2023년 완속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국전력 사업을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확인)	(확인)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확인)	(확인)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여수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여수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확인)	(확인)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1.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장소			
토지(건물) 소유자 성명			연 락 처 (휴대폰)
승낙사항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사항		
충전기설치 장소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 예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충전기 실제이용자			도로명 주소
<p>2024년 여수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지원을 위해 위 설치장소 (토지, 건물)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을 동의 하오니 완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사용동의)자 : 인감 또는 서명(인)</p> <p>붙임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했을 시) 1부. * 용도 : 비공용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p>			
<p>여수시장 귀하</p>			

현장 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앞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기 종류						
[비공용] <input type="checkbox"/> 완속충전기 <input type="checkbox"/> 이동형충전기 <input type="checkbox"/> 콘센트 설치비						
3. 차량 정보						
제작사		차종		확인	<input type="checkbox"/> 차량등록증 <input type="checkbox"/> 2024년 전기차 보조 대상 확정증빙 서류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input type="checkbox"/> 주거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직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실내, 지하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모자분할	<input type="checkbox"/> 벽부형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실외, 노상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한전불입	<input type="checkbox"/> 스탠드폴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지인		<input type="checkbox"/> 스탠드
	<input type="checkbox"/> 상가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input type="checkbox"/>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input type="checkbox"/>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input type="checkbox"/>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 영 중	<input type="checkbox"/> 급속(기)	<input type="checkbox"/> 완속(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설치예정	<input type="checkbox"/> 급속(기)	<input type="checkbox"/> 완속(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서명)	조사일	2024년 월 일		

8.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전경(전체) 사진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업명		2024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인 (위임하는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설치장소	소 유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주 소					
	성 명 (대표자)		연락처			
	보조금 입금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금액		금 원				
<p>위와 같이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여수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설치확인서 (서식 6) ②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③ 하자보증증권 ④ 세금계산서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⑥ 제작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⑦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⑧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⑨ 한전불입금 영수증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설치확인서 (서식 6) ②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③ 하자보증증권 ④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⑥ 제작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⑦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⑧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⑨ 한전불입금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장설치확인서 (서식 6) ②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③ 하자보증증권 ④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⑥ 제작사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⑦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⑧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⑨ 한전불입금 영수증 					

현장 설치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장소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비공용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과금형	콘세트 설치비
	기	기	기
충전기 종류	제작사 : 판매사 : 모델명 : 설치용량 : kw		
▼ 전경(전체) 사진		▼ 충전기 설치 사진	
여수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충전기 제조·판매사 :			(직인)
여수시장 귀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구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7.26.>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그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성명(법인명) 주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도 ○○시 ○○로 1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는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는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범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는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 80g/㎡]